

의안번호	2215571
의 퇴 인	우재준 의원
회 답 일	2026.01.29.
추계번호	25C7384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의2 (이자의 면제)	(제4항) 채무자가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 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18조 (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)	(제7항)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며, 그 기준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의2 (이자의 면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8조 (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¹⁾로 인하여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근로자(이하 “산재근로자”)에 대하여 ①그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, ②동 기간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함

- 현행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18조제7항은 대학생, 폐업 신고자, 실직자 및 공무원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 - 다만, 대학생을 제외한 폐업 신고자, 실직자 및 공무원 퇴직자 등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동법 시행령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음

[표] 현행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대상 및 판단 기준

구분	근거규정	판단 기준 (상환기준소득 > 합계액)
폐업을 신고한 자	제2호	근로소득금액 + 퇴직소득금액 + 양도소득금액
실직자 및 공무원 퇴직자	제3호	사업소득금액 + 퇴직소득금액 + 양도소득금액
육아휴직자	제4호	사업소득금액 + 퇴직소득금액 + 양도소득금액
복합 사유 (폐업실직 또는 폐업육아휴직)	제2호 내지 제4호	퇴직소득금액 + 양도소득금액
재난사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	제5호	퇴직소득금액 + 양도소득금액

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채무자의 상환 유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대상 인원, 상환 유예기간 등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산출하기 어려움

- 현행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(이하 “재단채”)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있음²⁾

1)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제5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업무상의 재해”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.

2. ~ 8. (생략)

- 참고로, '26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4,210억 5,100만원 중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자의 이자 면제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37억 2,000만원임
- * [참고자료] 취업 후 학자금대출 관련 예산 세부내역
- 개정안이 시행되어 산재근로자가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①원리금 회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자금 조달비용(재단채 이자비용) 증가분과 ②유예기간 동안 대출이자 면제되어 발생하는 이자수입 감소분의 합계임
- 그러나 현시점에서 향후 재단채 조달금리,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(조달비용 증가분) 상환 유예에 따른 재단채 평균잔액 증가분에 발행연도별 조달금리를 곱하여 산출하나, 현시점에서 향후 재단채 조달금리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 - (이자수입 감소분) 지원 대상자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,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할 산재근로자 인원 및 상환유예 기간을 추정하기 곤란함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2)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출연금)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,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취업 후 학자금대출 관련 예산 세부내역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'25	'26
재원 조달 비용 지원	186,274	163,985
이전연도 채권발행분	192,174	191,374
당해연도 채권발행분	32,589	32,970
이자면제 지원분	△38,489	△60,359
AI/SW분야 학업장려대출	—	2,923
이자면제 지원	38,489	60,359
군이자면제	529	495
기초·차상위 이자면제	5,547	4,921
다자녀 이자면제	17,731	18,640
중위소득 이하 등 이자면제	9,844	32,583
상환 유예자 이자면제	4,838	3,720
합계	224,763	227,267

자료: 교육부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